

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분석기구의 기준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대상별로 다음 구분에 따라야 한다.

검사분야	농산물, 수산물, 농지, 어장, 용수, 자재
유해물질항목	①농약 ②중금속 ③항생물질 ④잔류성 유기오염물질 ⑤병원성 미생물 ⑥생물독소 ⑦방사능 ⑧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
분석기구	제9조제4항의 분석방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구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